

의안번호	2203405
의 퇴 인	임오경의원
회 답 일	2024. 9. 19.
추계번호	24C3380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(체육용구의 생산 장려 등)	국민체육진흥기금 내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확대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(체육용구의 생산 장려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현행법상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⁾
 - 또한 체육행사의 기획,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대리와 관련된 업, 체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업으로 서비스 업종에 대한 융자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, 체육용구생산 및 서비스 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이 저조한 상황임

1) 2024년 3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을 받은 업체수는 133개임

[표 1] 최근 3개년(2021~2023년) 스포츠산업 용자 업종별 지원결과

(단위: 억원, 건)

구 분	2021년		2022년		2023년			
					용자		이차보전 ²⁾	
	지원 건수	지원 금액	지원 건수	지원 금액	지원 건수	지원 금액	지원 건수	지원 금액
민간체육시설	527	1,324	472	2,263	141	748	277	1,119
체육용구생산	12	26	6	10	2	13	5	13
스포츠서비스	10	11	10	16	-	-	8	18
합 계	549	1,361	488	2,289	143	761	290	1,150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 재구성

- 개정안에 따라 자금용자 대상을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,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,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게 되면, 용자 지원 대상 업체가 증가하여 그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완화된 요건에 부합하여 용자를 신청할 대상업체 수를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2) 이차보전은 이자 차이를 지원하는 것으로서, 스포츠용자사업 내에는 2023년부터 도입되었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